

가입·탈퇴 규정

2022. 7. 8. 개정
2022. 02. 10. 개정
2021. 12. 0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조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광진구체육회 (이하 “체육회” 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종목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3. “올림픽, 아시아게임, 전국체전, 대축전 종목”은 제8조 등급 및 가입심의 당시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제3조(가입신청서류) ①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5.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
6.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7.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8.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9. 클럽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10.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1.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2.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13. 당해 단체의 국제경기연맹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중앙경기단체에 관한 참고자료
-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 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광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광진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5개 클럽, 회원 15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동체육회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광진구를 대표하는 해당 동체육회 유일의 단체일 것.
2. 동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나 행사가 연 1회 이상 일 것.
3. 위 제2호와 관련하여 동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 및 행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는 5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체육회의 정관 및 ‘동체육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동체육회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제목개정 2022.7.8.>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광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광진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5개 클럽, 회원 10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광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서울시를 통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3개 클럽, 회원 6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정관 제10조에 따른다.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 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2. 7. 8.>

제8조(등급 및 가입심의)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를 별도의 등급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③ 심의기구는 가입요건 및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

④ 등급 및 가입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가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해당 단체가 된다.<개정 2022. 7. 8.>

⑤ 체육회는 등급 및 가입심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의 회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7. 8.>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종목단체가 정관 제10조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정관 제9조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③ 체육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정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인 경우

④ 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 7. 8.>

제10조(탈퇴신청) 회원단체가 체육회 정관 제10조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제목개정 2022. 7. 8.>

제1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2. 7. 8.>

제12조(구체육회 규정의 적용) 체육회는 회원단체에 한하여 가입 탈퇴 규정의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8.>

부 칙(2021. 1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